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5.10.14.(수) 10:00

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신선기

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3. 제안 이유

- 도민에게 불편 부담되는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정비 하고자 함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의 해지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의 해지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.